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4. 11. 12.

임실군의회회장

1. 제정이유

민선6기 군수공약 사항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 할 경우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최저 생산비를 참고로 차액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농업 소득을 보장해 주므로써 농축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 농업인 복지 향상과 농업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기금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다.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3조)
- 라. 차액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2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
- 나. 예산조치 : 2015년도 본예산 2,000백만원
- 다. 협의 : 예산담당 협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14.10.15 ~ 2014.11.04)결과 : 의견 불임 첨부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 (3) 비용추계서 : 불임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불임
 - (5) 관련법 발췌문 : 불임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 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 및 쌀 재배농가 자체수매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 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계통출하”란 임실군 내 농·축산업·조합공동법인 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6. “자체수매 차액”이란 ‘공공비축미 수매외 수매로 공공비축미 1등 기준 수매가격에서 ‘자체 수매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 최저 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농축산물 최저가격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임실군 관내 농·축산협동조합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18년까지 100억원을 조성·관리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차액을 지원할 때는 기금의 총액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종합적인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
4. 그 밖에 농축산물 생산 안정 기금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추진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 기금 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지역농업특화사업 단장, 축산치즈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은행임실군지부장, 임실군 농·축산협동조합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 및 생산자
2. 군의회 의원 1명
3.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인 또는 경험이 풍부한자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 생산 안정 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3인 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 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차액지원 농축산물 및 지원범위) ① 차액지원 대상 농축산물을 경작하거나 사육한 농가로 제8조 위원회의 결정 지원 대상을 확정하며 위탁사육 농가는 제외한다.

② 차액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1. 농작물 경지면적 30,000제곱미터 이내
2. 한우, 육우, 젖소는 연간출하 두수 50두 이내
3. 돼지는 연간출하 두수 2,500두 이내
4. 닭, 오리는 연간출하 두수 30,000수 이내
5. 그 밖의 농축산물은 중·소농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15조(차액지원 대상 농가) 차액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1. 신청일 현재 임실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법인 등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가
 - 가. 농작물은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 나. 한우, 육우, 젓소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 다. 돼지는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 라. 닭, 오리는 2,5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
 - 마. 그 밖의 농축산물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6조(지원신청)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계통출하증명서 또는 자체수매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단, 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 법인과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이 농가를 대표해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최저가격 결정) 최저 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로 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자체수매 차액결정은 위원회에서 공공비축미 가격 등을 참고로 한다.

제18조(최저가격 고시) 군수는 결정된 최저 가격을 해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 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2. 기금출납원 : 농정기획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차액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의 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임실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축산물 생산 안정 차액 지원신청서

1. 신청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영농경력	년	비고	

2. 신청내용

신청품목	품종	출하가격	단위	수량	출하총액
계					

※ 구비서류 : 계통출하증명서(임실군 관내 농축협, APC,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을 통해 출하한 증명서), 또는 자체수매 확인서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 (인)

임실군수 귀하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4년간 군비100억 출연에 따른 비용 발생

○ 관련조문

-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군비 출연금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년 20억원 출연
- 기타 출연금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년 5억원 출연

나. 추계 결과

- 4년×25억원=100억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군비 20억원×4년=80억원
- 기타 5억×4년=20억원

3. 재원조달 방안

2015년부터 본예산에 반영

4. 작성자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김학모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4A전북임실052			
정책명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지역농업특화사업단		
	담당자명	박희율	전화번호	063-640-2412
주요 분석평가 내용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7조 위원회 구성에 성별균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제 15조 차액 지원 대상농가에 한정하고 있는 생산규모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농민세대주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게 농사를 하거나 가축사육을 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생산규모를 높게 한정 할수록 여성세대주의 수혜는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가격 저하로 인한 피해는 소규모 영농자의 경우 더욱 크게 타격을 느낄 수 있음. 따라서 지원대상 생산규모를 여성세대주 생산규모를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또는 여성세대주의 경우규모가 미달 되더라도 적정수준에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보완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지역농업특화사업단)	<p>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위원회 구성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명시 하겠으며, 제15조(차액지원 대상 농가)은 농 축협 및 공선회등 계통출하한 농가를 의미하며, 남녀세대농가를 구분하여 지원한다면 이 조항을 이용하는 농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검토 연구하도록 하겠으며, 타 시군구 조례에도 남녀세대농가를 명시하는 사례가 없음,</p>			
<p>2014년 11월 05일</p> <p>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p> <p>분석평가책임관 귀하</p>				

□ 지방자치법 제142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제42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어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포획·채취·양식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민단체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수정요구안	수정 사유 및 반영결과
<p>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 정기금 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 농업특화사업단, 기획감사실장, 축산치즈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임실군지부장, 임실군 농·축산협동조합장으로 한다.</p>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축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2. 임실군의회의원 1인 3.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인 또는 경험이 풍부한자 <p>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 정기금 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군청 ○○○○○장, ○○○○○장 3인과 농협중앙회임실군지부장, 임실군 농·축산협동조합장 등 5인을 합해 모두 8인으로 한다.</p> <p>④ 위촉직 위원은 임실군의회의원 1인과 농축산물 생산자나 생산자단체에 속한 사람 6인 등 모두 7인을 군수가 위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삭제-</p> <p>⑤ 부위원장은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에 속한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p>	<p>○ 제7조의 제3항~제4항 : 15인의 위원회 가운데 당연직 위원의 수는 군수를 포함한 행정3인과 농축협 임원 5인 등 모두 8인으로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실군의회의원 1인과 생산자단체 관련인사 가운데 6명을 위촉함으로써 관과 민의 의견이 균형있게 대변될 수 있도록 한다.</p> <p>※ 위원 수를 15인에서 17인으로 상향 반영</p> <p>○ 제7조의 제5항 : 부위원장을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에 속한 사람 중에서 호선함으로써 민관이 좀 더 긴밀한 관계 속에서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p>

조례안	수정요구안	수정 사유 및 반영결과
<p>제13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14조(차액지원 농축산물 및 지원범위) ① 차액지원 대상 농축산물을 경작하거나 사육한 농가로 제8조 위원회의 결정 지원 대상을 확정하며 위탁사육 농가는 제외한다.</p> <p>② 차액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작물 경지면적 30,000제곱미터 이내 2. 한우, 육우, 젖소는 연간출하 두수 50두 이내 3. 돼지는 연간출하 두수 2,500두 이내 4. 닭, 오리는 연간출하 두수 30,000수 이내 	<p>제13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으로 충당하지 아니하며, 위원장이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한다.</p> <p>제14조(차액지원 농축산물 및 지원범위) ① 차액지원 대상 농축산물을 경작하거나 사육한 농가로 제8조 위원회의 결정 지원 대상을 확정하며 위탁사육 농가는 제외한다.</p> <p>② 차액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작물 경지면적 30,000제곱미터 이내 2. 한우, 육우, 젖소는 연간출하 두수 50두 이내 3. 돼지는 연간출하 두수 2,500두 이내 4. 닭, 오리는 연간출하 두수 30,000수 이내 5. 기타 농축산물의 지원은 중소농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p>○ 제13조의 제2항 :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산이 정확히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모호함. 이 예산이 만약 기금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의 설치와 운용이라는 조례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기금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조사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과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p> <p><u>※기금외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u></p> <p>○ 제 14조의 제2항 제5호 : 기타 작물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제1호~4호까지의 제한 범주로 보았을 때, 기타 작물은 복합영농을 중심으로 농업을 운영하는 중소농의 기준에 맞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p> <p><u>※ 기타 농축산물의 지원은 중소농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u></p>

조례안	수정요구안	수정 사유 및 반영결과
<p>제15조(차액지원 대상 농가) 차액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일 현재 임실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농작물은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나. 한우, 육우, 젖소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다. 돼지는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라. 닭, 오리는 2,5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 <p>제22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15조(차액지원 대상 농가) 차액지원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농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일 현재 임실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농가 중에서 생산자단체법인 등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가 <p>제22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p>	<p>○ 제15조 : 비농가 혹은 실제로 임실군에 거주하지 않는 농가에까지 지원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각 호가 해당이 아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농가에 한해 지원금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u>※ 제2항에 생산자단체법인을 명시</u></p> <p>○ 제22조 :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할 의무가 있다. <u>※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를 명시 함</u></p>